영등포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檢討報告書



2017. 9. 1.

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264호로 2017년 8월 29일 허홍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 (안 제2조)
-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3조)
- 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안 제5조)

-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및 적용 사업 범위 (안 제6조~안 제7조)
-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건축법」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2017. 8. 4. ~ 8. 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발생률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도시환경은 공간상 안전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요소들은 주민불안 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의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임.

이러한 도시환경 구조에서 경찰력과 주민의식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 6. 노유자시설
- 7. 수련시설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11.28.]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노인복지시설계획
- 2. 방재계획(防災計劃)
-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4.22., 2009.5.27., 2012.2.1., 2013.12.24., 2015.9.1.>

-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2.11.>

-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 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